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감독원

보도시점 2026.11.12.(목) 08:30 배포 2026.11.11.(수) 09:00

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합니다.

-「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」 마련 -

✓ 임추위 및 승계절차의 독립성 강화로 **CEO의 참호구축 원천차단**
- **全 금융사에 독립이사제** 도입 및 **CEO 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**로 구성
- CEO의 승계절차 **부당 관여 금지** 및 임추위 위원 접촉 시 **공시 의무** 부여
- **임추위원장**에 **책무구조도** 적용 및 **주총에서** 임원후보 추천사유 **직접 설명**

✓ **은행지주 CEO의** 참호구축을 통한 **장기연임** 등 **불합리한 관행 혁파**
- 은행지주는 **주총에서 CEO 선임**, **임추위·주총 의결요건 단계적 강화**
- CEO **승계절차 조기개시** 및 평가요건 구체화, 평가결과 공시 강화
- 前任 CEO, 임원 등 **고문 위촉시 보수기준** 마련 및 공시 등 강화

✓ **주주의 독립이사 후보추천제** 도입 및 **기관투자자**의 **주주활동** 지원

✓ **고액 연봉자 보수공시 강화** 등 **성과·보수운영**의 **합리성** 제고
- 등기임원 보상계획 **주총설명(Say-on-Pay), 성과보수 환수제(Clawback)** 도입

1. 당정협의회 개요

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'26.11.12.(목) 07:30, **당정협의회**를 **개최**하여, 우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반복되는 논란을 해소하고 **국민의 신뢰회복** 및 **금융경쟁력 제고**를 위한 「**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**」을 발표하였다.

< 당정협의회 개요 >

- **일시/장소**: '26.11.12.(목) 07:30-08:30 / 국회의원회관(정책위원회 회의실)
- **참석자**: [당] 권칠승 정책위의장, 유동수 정무위원장, (정무위)박상혁 간사, 김현정 의원, 박민규 의원, 박홍배 의원, 전현희 의원 등
 [정] (금융위)금융위원장, 금융정책국장 (금감원)금융감독원장, 은행담당 부원장보
- **안건**: ❶ 8개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결과 ❷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

2. 추진경과

그간 금융위원회는 **'25.12.19. 대통령 업무보고**를 **계기**로 **CEO 셀프 연임, 참호 구축** 등 **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**를 **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**을 적극 **검토**해왔다. 그 일환으로 '26.1월부터 금융감독원·연구원·학계·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**「지배구조 선진화 TF」**(이하 'TF')를 **구성·운영**하고, **금융권 지배구조**의 **공정성·투명성**을 **제고**하기 위해 개선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.

이와 함께, **금융감독원**은 **'26.1월 8개 은행지주**를 대상으로 **지배구조** 관련 실제 **운영현황 전반**에 대해 **점검**을 **실시**하였다. 특히, **CEO 승계절차**의 **공정성**과 **독립성**, **사외이사 선임과정**의 **투명성**, **이사회**의 **견제기능**, **성과보수 운영** 등에서 보완해야 할 **문제점**들이 확인되었다.

이에 **금융위원회**는 금융감독원의 **특별점검 결과**와 **TF 논의**를 바탕으로 **금융회사 지배구조**의 주요 **문제점**을 **분석**하고 **개선방안**을 **마련**하였으며, **당정협의**를 통해 금융회사의 **책임 있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**을 위한 「**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**」을 확정하였다.

3.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

「**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**」은 최근 **상법 개정의 취지**와 **국제적 정합성**, **금융권 운영 현실**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크게 **네 가지 방향**으로 **금융회사 지배구조**를 **개선하는 내용**을 담고 있다.

첫째, 임추위 및 이사회의 독립성·책임성을 강화하여 **CEO의 참호 구축을 원천적으로 차단**한다.

CEO가 경영승계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**임원후보추천위원회**(이하 '**임추위**')의 **독립성**과 **책임성**을 **대폭 강화**한다. ▲우선 CEO 후보 추천 **임추위**는 **전원 독립이사로 구성**하고, 現 CEO가 **독립이사** 및 **감사위원**을 **추천**하는 **임추위**에 **참석**하는 것을 **금지**한다. ▲아울러 **現 CEO**가 **차기**

CEO **경영승계절차**에 **부당하게 관여**하지 못하도록 **금지 규정**과 **위반 시 제재**를 **신설**하고, 경영승계절차 중 **임추위 위원**과 **접촉**하는 경우 **공시의무**를 부과한다. ▲이와 함께, **임원후보 추천업무**에 대한 **임추위**의 **책임성**을 강화하기 위해, ❶**주주총회**(이하 '주총') **소집 시 후보 추천사유**에 **임추위 위원 전원**의 **확인서**를 **첨부**하도록 하고, ❷**임추위원장**이 **후보 추천사유**를 주주들에게 **직접 설명**토록 한다. ❸**임추위원장**에게는 임추위 운영과 관련한 **책무구조도**를 **적용**한다.

숏 **금융회사**에 **독립이사제**를 **도입**하고 **이사회**의 **독립성** 및 **책임성**을 **강화**한다. ▲**상장 금융회사**에 대해 일정지분 이상 보유 주주로부터 **독립이사 후보**를 **추천**받는 **제도**를 도입한다. ▲또한, 금융회사가 **독립이사만**의 **간담회**를 **연 2회 이상 개최**하도록 의무화하고, **독립이사**의 경영진 감시역할을 평가할 수 있는 **평가지표**를 **보완**하고 **세부 활동내역** 등에 대한 **공시**를 강화한다. ▲아울러, **이사회 의사록**의 **충실한 작성 의무**를 **명시**하여 이사회 운영의 공정성·투명성을 제고하고, **이사회**의 **전문성·다양성·책임성**을 **확보**하기 위한 **개선조치**들*을 통해 **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**을 강화한다.

* 이사회 내 위원회(例: 위험관리위원회)의 전문가 자문비용 지원 확대, 이사회 구성·후보 선정기준 공시 강화, 은행지주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

둘째, 은행지주 CEO의 참호구축 등을 통한 장기연임 관행을 전면 개선한다.

소유가 **분산**되어 **지배주주가 없는 은행지주** CEO의 **경영승계절차**에 대해 **주주** 및 **임추위**의 **통제**를 **강화**한다. ▲**은행지주** CEO는 **주총**에서 **선임**하도록 하고, **선임·연임 과정**에서 **임추위** 및 **주총의 의결요건**을 **단계적**으로 **강화**한다. ❶현행 규정상 **임추위**는 **출석위원 과반수**의 찬성으로 CEO를 **추천**해 왔으나, 앞으로는 **감사위원** 추천에 준하여 **위원 총수**의 **2/3 이상**의 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, **연임**의 경우에는 **3/4 이상**의 찬성으로 추천하도록 한다. ❷또한, 현행 규정상 CEO는 **사내이사**로서 **주총**에서는 출석의결권 **과반수**의 찬성(발행주식총수 1/4 이상)으로 선임되나, '**1회 연임 시**'에는 **2/3 이상**(발행주식총수 1/3 이상), '**2회 이상 연임 시**'에는 **3/4 이상**(발행주식총수 1/2 이상)의 찬성을 받도록 하여 **주주**에 의한 **실효적인 통제**가 이루어지도록 강화한다.

* **(현행) ❶임추위·❷주총**에서 **CEO 선임·연임시** 법령 및 내규상 **과반수 찬성**으로 **의결**
(단, 일부 회사는 내규상 과반수 찬성보다 강화하여 규정)

(개선) ❶임추위: **(선임) 2/3 이상**† → **(1회 연임~) 3/4** 이상

❷주 총 : **(선임) 과반수** & 발행주식총수 1/4 이상 →
(1회 연임) 2/3 이상 & 발행주식총수 1/3 이상 →
(2회 연임~) 3/4 이상 & 발행주식총수 1/2 이상

† 현재 감사위원 임추위는 위원 총수의 2/3 이상 찬성으로 의결(「지배구조법」§19④)

CEO 승계절차 관리 강화를 통해 **경영승계절차**의 **공정성**과 **투명성**을 제고하여 CEO에 대한 연기금 등 **시장의 평가 기능**을 **한층 강화한다.** ▲**CEO 평가요건** 및 **세부기준**을 **구체화**(금융사고·제재 등 사회적 논란을 포함한 비재무요소 등)하고 절차 중 **임의적 변경**을 **금지**하는 한편, **평가결과 공시**를 **강화**한다. ▲또한, **승계절차**를 **조기**에 **개시**하여(例: 최종후보 선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前 또는 임기종료일 6개월 前) 충분한 검증기간을 부여한다. ▲아울러, **CEO 상시 후보군**을 보다 **체계적으로 관리**하고, **외부 후보군**에게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**공정한 경쟁 환경**을 제공하도록 개선한다.

CEO 연임과 **퇴임** 과정에서 반복되어 온 **불합리한 관행**을 **업계 스스로 혁파**하도록 하여 **책임 있는 경영문화**를 **정착**시킨다. ▲은행지주 등에서 **前任 CEO, 임원** 등을 **고문**으로 **위촉**할 때 적용할 **합리적인 보수기준**을 마련하여 **관련 내용**을 **공시**하도록 하고, **해당 기준**의 **적정성**을 **점검**해 나간다. ▲또한, **現 CEO**의 **연임**을 위한 **부당한 광고비 집행**을 **자제**토록 하고 관련 **광고비 규모**를 **공시**하도록 한다.

셋째,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.

기관투자자 등이 새로 도입되는 **'독립이사 후보추천제도'를 적극 활용**해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**명확한 유권해석**을 **제공**하여 **주주·시장 중심**의 **감시**와 **견제**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.

< 유권해석(안) 주요내용 >

❶ '**이사회**의 요청'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요청(**임추위, 주주간담회, 홈페이지 공개 등**)에 따른 추천도 **경영권 영향 목적**이 아님을 명확화

❷ 금융회사가 추천요청을 하면서 **임추위 추천명단 포함을 표명**한 경우에도 **'경영권 영향 목적'이 아님**을 명확화

또한, **기관투자자**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**금융회사 이사회(독립이사)의 독립성**과 **책임성**을 보다 적극적으로 **점검**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.

< CEO 승계과정에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통한 시장평가 강화 >

❶ "독립이사 후보추천제도"를 통해 **독립적인 이사후보**를 추천

❷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**"이사회(독립이사)"**의 **독립성·책임성 적극 점검**

❸ 엄격해진 **CEO평가·공시**에 따라 **적합성 판단→ 강화된 주총 요건**에 따라 의결권 행사

넷째,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인다.

주주들이 **개별 이사의 보수가** 지위·역할·책임 등에 맞게 **적절히 설정**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**정보 제공**을 **강화한다.** ▲그간 **주총에서는** 이사들의 **보수총액만 승인**하고 **개인별 보수**는 **이사회**에서 **결정**해 왔으나, 앞으로는 일정 규모(例: 자산규모 2조원) 이상 상장 금융회사는 **개별 임원**의 **보수지급 계획**을 **주총**에서 **설명·보고**(Say-on-Pay)하도록 한다. ▲또한, **(성과)보수**가 **일정액 이상**인 **상위 임직원***에 대하여 개인별 **(성과)보수 총액**을 **공시**하도록 하고, **보수와 성과 간 연계성**을 확인할 수 있도록 **관련 정보**의 **공시**도 **강화**한다.

* 例) ①보수총액 5억원 이상인 「지배구조법」상 임원, ②성과보수 총액 3억원 이상인 「지배구조법」상 임직원 (제도개선에 따른 영향분석을 토대로 상위 5~10인 등 인원제한 검토)

아울러, 금융회사 임원 등의 **과도한 위험추구**를 **방지**하고 **업무수행**에 대한 **책임성**을 **제고**한다. ▲현재 금융회사는 **성과보수**의 **일정 비율**(40% 이상)을 **일정 기간**(3년 이상) **이연하여 지급**하고 있으나, 앞으로는 **최소 이연지급 비율**과 **기간**을 **확대**한다.* ▲또한, **고의·중과실**로 **회사**에 **손실**을 초래하거나 성과보수 산정 기준이 된 **재무제표**가 **정정**된 경우 이미 지급된 **성과보수**를 **환수**하는 **제도**(Clawback)를 **도입**한다.

* 例) 성과보수 최소 이연 비율·기간 상향(40% → 50%, 3년 → 5년)

4. 향후계획

당정은 「**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**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**입법** 등 **모든 후속조치**를 **속도감 있게 추진**하기로 **협의**하였으며, 오늘 발표한 안을 바탕으로 연내 **지배구조 관련 법령** 및 **모범관행 개정안**을 **마련**하기로 하였다.

권칠승 정책위의장은 **금융**의 **가장 중요한 자산**은 **국민의 신뢰**라고 **강조**하였다.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에서 '**셀프 연임**'이 반복되고, 임원 등이 **단기 성과**에 따른 **고액 보수**를 받으면서도, **그 결과에 대한 책임**은 **지지 않는 관행**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하였다.

이번 개선방안은 이사회와 주주 등 **시장**이 **경영진**을 **실질적**으로 **견제**할 수 있도록 하고 **성과**에는 **보상**이, **손실**에는 **책임이 따르는 원칙**을 세우자는 것이라고 밝혔다. 아울러 **투명한 지배구조**는 금융회사에도 결코 부담이 아니며, **역량 있는 리더**가 **공정하게 선택**될 때 **금융산업**의 **경쟁력**도 **한 단계 높아질 것**이라고 언급하였다.

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**주주 중심**의 **금융회사 지배구조**로 나아가는 **의미 있는 진전**이라고 평가하였다. 특히 **독립이사 추천**부터 CEO **연임, 임원 보수**까지 **주주**가 **금융회사**의 **핵심 의사결정**에 **실질적**으로 **참여**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고 설명하였다. 이처럼 **주주**의 **참여**와 **감시**가 **살아 있는 지배구조**가 결국 **금융소비자 보호**와 **금융회사**의 **건전한 성장**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. 아울러 **정무위원회**에서 이번 개선방안의 취지가 **실효성 있게 구현**될 수 있도록 **입법 논의**를 **충실히 진행**하겠다고 언급하였다.

이억원 금융위원장은 **금융회사**는 **국민의 재산**을 **관리·운용**하고 **자금**을 **중개**하는 **공공성**이 **높은 기관**인 만큼, 금융회사의 **지배구조**는 개별 회사의 경영 문제를 넘어 **금융시장 안정**과 **국민 신뢰**에 **직결**된다고 언급하였다. 특히 **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**는 **국민과 시장의 신뢰**를 높이는 **가장 중요한 기반**이며,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**생산적 금융** 등 **금융회사의 경쟁력**도 **제고**할 수 있다고 밝혔다.

또한, **최근 상법 개정**을 계기로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진 만큼 금융회사 역시 **공공성에 걸맞은 수준**의 **책임성**과 **투명성**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. 이번 개선방안이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**법률** 및 **하위규정 개정**과 **모범관행 정비**를 **차질 없이 추진해**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**실질적인 변화**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**독립이사**가 **경영진**에 대해 **충실히 견제·감시**할 수 있는 **권한**과 **여건**이 마련되는 만큼,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려면, 이에 걸맞은 **독립이사의 전문성**과 **책임 있는 역할 수행**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. 이와 함께, 이번에 마련된 **제도개선 사항**이 **금융현장**에 **충실히 정착**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, **지배구조 모범관행 개정**, **이행현황 점검** 등을 통해 **지배구조 선진화**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.

향후 **금융위원회**는 이번 개선방안을 반영한 **「지배구조법」 개정안**을 **연내 마련**하고, **조속히 입법**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 또한, **스튜어드십 코드**를 **정비**하고, **금감원·유관기관·민간 전문가** 등이 참여하는 **실무 TF**를 통해 **하위규정** 및 **모범관행 개정** 등 **기타 제도개선**도 **신속히 추진**해 나갈 예정이다.

아울러 **제도개선 이후**에도 금융회사의 **이행상황**을 **지속적**으로 **점검**하여 **시장의 감시**와 **평가**가 **실질적**으로 **작동**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**금융권과의 소통**을 통해 **개선과제**가 **현장**에 **안착**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
※ [별첨1] 8개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결과
[별첨2]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	책임자	과 장	권유이 (02-2100-2830)
		담당자	사무관	정종헌 (02-2100-2824)
	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	책임자	과 장	김미정 (02-2100-2680)
		담당자	사무관	박보라 (02-2100-2681)
<공동>	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	책임자	국 장	김남태 (02-3145-7050)
		담당자	부국장	임연하 (02-3145-7060)
	금융감독원 감독혁신국	책임자	국 장	최정환 (02-3145-8300)
		담당자	팀 장	유상범 (02-3145-831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 고 **지배구조 개선방안 주요 추진과제 및 조치사항(안)**

추진과제	조치사항(안)
1. CEO의 참호구축 원천차단	
[1] CEO의 임추위 영향력 차단 및 승계절차의 독립성 강화	
❶ 임추위 구성의 독립성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	법률
❷ 現 CEO와 임추위 위원 간 접점 차단	법률, 감독규정
❸ 임추위원장에 대한 책무구조도 적용	시행령
❹ 임추위의 CEO·독립이사 검증책임 강화	법률
[2] 독립이사제 도입 및 독립성 확보	
❶ 全 금융회사에 독립이사제 도입	법률
❷ 독립이사 선임과정의 독립성 확보	법률
❸ 독립이사 간담회(독립이사만의 회의) 의무화	법률
❹ 독립이사 연임 시 평가·공시 강화	모범관행
[3] 이사회의 독립성·책임성 강화	
❶ 이사회 의사록 충실작성 의무 부여	법률
❷ 이사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비용 지원	법률
❸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·전문성 제고	모범관행
❹ 은행지주 이사의 배상책임 강화	법률
2. 은행지주 CEO의 장기연임 관행 개선	
[1] CEO 임추위·주총 의결요건 강화	법률
[2] 은행(지주) CEO 승계절차 관리 강화	
❶ CEO 평가요건 구체화 및 평가결과 공시 강화	모범관행
❷ CEO 승계절차 조기개시 및 최소검증기간 부여	모범관행
❸ CEO 상시 후보군 관리 강화	모범관행
❹ CEO 외부 후보군 공정경쟁 환경 제공	모범관행
[3] 불합리한 관행 혁파	
❶ 前任 CEO 등 고문위촉 시 보수기준 마련	모범관행
❷ 現 CEO 연임목적의 부당한 광고비 집행 통제	감독규정, 모범관행
3.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활동 지원	
❶ 기관투자자의 독립이사 후보추천 활성화	유권해석
❷ 기관투자자의 이사회 독립성 점검	스튜어드십코드
4. 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	
❶ 임원 보수지급계획 주주통제 강화(Say-on-Pay 방식)	법률, 시행령
❷ 성과보수 이연지급 강화 및 환수제(Clawback) 도입	법률, 시행령
❸ 보수위원회 위원의 이해상충 방지	법률
❹ 개별 임직원 보수지급액 공시 확대	법률, 감독규정